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00호

2019. 1. 3.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례]

제694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5

제694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7

제694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69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0

제695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695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69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19

제695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21

제6955호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22

제695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6957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6958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제695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6960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29

제69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33

제6962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35

제6963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38

제6964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6965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696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제696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6968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6969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7

제6970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51

제6971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6972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56

제697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6974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697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97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97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69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697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698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698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제6982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6983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698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6986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6987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2

제698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698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699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6991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699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99

제6993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04

제699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105

제699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07

제699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108

제6997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11

제699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112

제699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13

제700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16

제700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117

제700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118

제7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20

제700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21

제700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125

[입법예고]

제20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2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 할인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약자 등을 위한 시설 개선, 공공자전거 요금감면 및 정비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공공자전거 활성화, 상위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전기 충전소 설치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2. 주요내용

- 가.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및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일반인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안 제3조제3항)
- 나.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및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규정(안 제10조의2)
- 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공공자전거 관련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 승인 시 재위탁 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의2제3항)
- 마.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697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